

참고자료. 소형열병합발전 설치지원금 및 설계장려금 지원제도 변경

○ 지급대상

- 열병합 설치지원금 : '05년 1월 이후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한 자
- 열병합 설계장려금 : '05년 1월 이후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설비의 원동기(가스엔진, 가스터빈 등) 계통을 설계한 기계설비설계사무소

○ 지급금액

| 구 분 | 지 급 금 액 (원) | | | 한 도 (만원) | |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기 존 | 변 경 | 증 감 | 기 존 | 변 경 | 증 감 |
| 설치지원금 | 20,000 | 30,000 | 10,000 | 2,000 | 3,000 | 1,000 |
| 설계장려금 | 10,000 | 5,000 | △5,000 | 1,000 | 500 | △500 |

- 신청기간 : 도시가스 공급개시일 3개월 이내(단, 신축 또는 증축건물은 건축물의 준공일 기준이며, 가스공사 관할지사 접수일 기준)

- 접수처 :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 관리부

○ 신청방법 및 절차

